

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

[시행 2022.04.12]
(제정) 2022.04.12 조례 제1515호

관리책임부서명 : 의회사무국
관리책임전화번호 : 02-2094-2072

제29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(각 상임위원회·특별위원회를 말한다)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원이 발의하되 대표발의자를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의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접수된 의안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시 비공개 목록은 의장이 정한다.